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3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13

다. 상정일자 : 제 11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 1차 총무위원회(2003. 3. 20)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김용완 보건행정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보건소 수가조례(별표)항목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 운전면허 응시·적성검사서, 질병진단서, 건강진단서 등의 종류가 있음에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세분화가 필요함
- 보건소 수가조례(별표)항목 중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는 보건복지부 『위생분야종사자등의진단규칙』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례상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해야 하므로 삭제하려는 사항임.

3. 주요골자

가. 보건소수가조례(별표)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'2.일반진단서'를 운전면허응시·적성검사서, 질병진단서, 건강진단서'로 세분하고

나. '5.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'를 삭제함.

4. 관계법령

가. 지역보건법제14조

나. 보건복지부령 「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10조 (수수료)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 조례상의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일반진단서(별표 2호)의 종류가 3종이 있음에도 통칭하여 일반진단서로 표시되어있어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종류별로 나열코자 하는 것과,
- 별표 5호는(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)“위생분야 종사자등의 진단규칙”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, 그대로 존치해 두어도 문제는 없으나, 위의 규칙이 개정될때마다 조례로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됨.

6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7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